##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영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630

발의연월일: 2020. 11. 23.

발 의 자:김영배·김철민·주철현

신정훈 • 기동민 • 김승원

김경만 · 홍성국 · 김주영

양기대 · 양정숙 · 이해식

강민정 · 서영교 의원

(14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정부는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공 공재개발 및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사업을 도입하고,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 침체된 도심 공동체 회복과 도시경제를 재건하기 위한 정 책을 추진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에 재개발 및 재건축, 도시재생사업 등 도시정비사업이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원활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지적이 있음.

이에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의 적용범위에 도시정비사업을 추가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주거안정정책을 지원하고자 함(안제2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##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도시정비사업

부 칙

이 법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적용 범위) ① 이 법은 다	제2조(적용 범위) ①
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	
하는 사업(그에 부대되는 사업	
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중 제	
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	
접 설치·경영하는 사업으로서	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	
상의 사업(이하 "지방직영기업"	
이라 한다)과 제3장 및 제4장	
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	
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	
하여 각각 적용한다.	
1. ~ 9. (생 략)	1. ~ 9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<u>10. 도시정비사업</u>
②・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